

소 장

원 고 장 OO 외 63
(별지기재와 같음)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우경선
의정부시 가능 1동 363-1 (법전빌딩 304호)

피 고 마포구청장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76. 1. 21. 행한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18의 5 - 서교동 329의 11 간 도로개설 도시계획시설(도로) (폭 15미터 , 길이 1,980미터) 결정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00. 12. 20. 행한 위 1.항 기재 거리간 도로개설 및 견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위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18의 5 - 서교동 329의 11의 거리(이하 이 사건 거리라 합니다)는 1960- 70대부터 원고들 외에도 현재까지 250여 세대 주민들이 음식점등을 영위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속칭 먹자골목으로 비교적 저렴한 한국고유의 전통음식과 저렴한 실용적인 필수품가게로 형성되어 서민의 애환과 애절한 정서가 담긴 생활의 터전이며 서울시의 명소입니다.
2. 사건의 경위
 - 가. 피고는 1976. 1. 21. 이 사건 거리에 대하여 건교부 고시 제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폭 15미터 길이 1,280미터) 결정을 하였었습니다.
 - 나. 22년이 지난 1998.4. 23. 위 계획을 변경결정을 하여 마포구 고시 제98-30호, (폭 15 - 45 미터, 길이 1,980미터)로 고시였습니다.

다. 같은 해 4. 25.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1998. 4. 26 - 5. 9), 같은 해 5. 12. 마포구고시 제 98- 43호로 인가고 시하였습니다.

라. 그후 같은 해 11. 10. 서울시가 시행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따라 마포구는 이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사업에 선정 하여 2000. 10. 30. 주민설명회, 같은 해 12. 20. 도로개설공사 및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실시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해 11.20. 공람공고, 같은 해 12. 30. 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3. 청구취지 1.처분의 위법성

가. 절차적 위법성

1) 피고 마포구가 이 사건 거리에 1976. 1. 26. 결정고시한 도시계획(도로)결정은 20여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으로 위 결정이 있는 후 원고들은 도시계획으로 인한 재산권행사 등의 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었습니다.

2) 피고가 1998. 4. 23. 행한 도로폭 15미터에서 15미터 - 45 미터로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이나 행정절차법상의 사전에 주민에게 통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민의 의견제출,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행하지 않고 1998. 4. 25.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만 1998. 4. 26.부터 5. 9. 까지 행하여 주민들은 사전통지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할 기회를 갖지 못해 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3)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계획되는 것으로서 위 처분은 25년이 지난 결정으로서 현 도시계획법 제 41조에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에 대하여 그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실체적 위법성

1) 위 처분은 1976년 당시 건축물정비와 이면도로확보, 면학분위기 조성 및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입니다.

2) 위 처분은 25여년이 지난 처분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밝히고 있듯이 이미 위 처분이 결정된 때와는 달리 이 사건 거리 양옆으로 6-8미터의 소방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인근에 양화대로, 서교로, 대흥로, 와우산길 등이 이미 개설되어 있어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주위 환경이 많이 변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위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4. 청구취지 2의 위법성

가. 절차적 위법성

1)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서울을 보행 삼불(불안, 불편, 불리)의 도시에서 삼편(편안, 편리, 편익)도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횡단 보도 복원 및 차없는 거리 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서울을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든다는 사업계획입니다.

2) 이는 불안하고 불편한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시키고 나아가 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고 자동차위주의 도로구조를 보행자위주의 도로로 전환하고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여 시민의 보행권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걷고 싶은 도시로 바꾸어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추진 전략으로 시, 자치구별 시범가로 선정, 경쟁적으로 사업 시행 후 점차 확산하기로 함에 따라

ㄱ. 도심부 중심가로서 보행 다중이용 거리인 종로 (종로 2, 3가 1,000m)거리,

ㄴ. 전통문화 보존과 관광루트 연계로 지역활성화 가능한 거리인 인사동길 690m

ㄷ. 부도심권 간선도로로서 신, 구문화 화합의 거리인 올림픽 공원

- 암사동 선사유적지간 지하철 8호선 복구공사 구간등을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마포구는 기존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인 위 거리(서교동 - 상수동(홍대))를 걷고 싶은 거리로 선정하여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2) 처분의 위법성

가. 절차상 위법성

피고 마포구는 위 실시계획을 위하여 제 2조 제 1항에 따라 1998. 11. 10. 걷고 싶은 거리 사업위치 선정 후 2000. 10. 30.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나 위 일시 14시에는 서교동, 16시에는 동교동 회의실에서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마포구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미확정된 사항이므로 구청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므로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에게 사전통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절차인 의견제출절차와 공청회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할 것입니다.(법제 22조)

나. 실체상 위법성

1) 이 사건 거리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선정기준과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보행자 다중 거리도 아니며, 전통문화 보존과 관광루트 연계로 지역활성화 가능한 거리도 아니며, 간선도로로서 신구문화 화합의 거리도 될 수 없는 지역으로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위 거리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많은 학문의 전당인 대

학들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서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로 만들어 오히려 소란과 음주 퇴폐행위의 온상이 될 위험성이 있으며 오히려 정숙한 가운데 학생들과 교수들이 학업과 학문연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지역입니다.

2) 이 사건 거리에 낡고 노후한 건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속칭 홍대앞 먹자골목으로 서울의 명소가운데 하나이며 비교적 저렴한 한국고유한 전통음식과 저렴한 실용적인 생활 필수품가게로 형성되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20년여동안 250여세대 1000여명의 서민들이 어려운 경제 환란가운데서도 자녀를 교육시키고 생계를 유지해온 애환이 담긴 생활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리에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이사건 거리를 철거하고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을 없애므로 위협받는 주민들의 생존권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므로 인하여 얻는 어떤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포구의 이 사건 거리에 대한 실시계획결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34조에 반하며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절차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의 목적에도 반하는 위헌, 위법한 처분입니다.

3)안팎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미 25년동안 미집행되어 이미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거리에 사업비 23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할 지방재정법상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2조 제1항)

4)위에서 본 바와 사유로 인해 - 행정계획은 재량행위이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판례(대판 1996. 11. 29. 95누 8567) 따라 위 마포구청의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처분은 형량원리에 어긋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서 류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분 1통

1. 소송 위임장 1통

2001. 3.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 OO , 우 OO

서울지방법원 귀 중